

화성우체국 공고 제 2016-33호

화성동탄4동우체국이 2017. 1. 2. 개국함에 따라 행정효율과
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2월 5일

화성우체국장

- 최초사용년월일 : 2016년 12월 5일
- 등록관인



화성동탄4동우체국장인

- 최초사용년월일 : 2016년 12월 5일
- 전자이미지관인대장



화성동탄4동우체국장인